

#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직원인사규정시행내규

제정 2001. 7. 2.  
개정 2012. 9. 6  
개정 2012. 12. 20  
개정 2015. 4. 10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계약직직원(이하 "계약직"이라 한다) 인사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 제13조에 의하여 계약직의 채용계약과 해지, 근무실적 평가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채용계약)** ① 계약직 채용계약서(이하 "계약서"라 한다)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. 다만, 계약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②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 간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을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**제3조(채용구비서류)** ① 계약직의 채용구비서류는 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에 의한 신규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외에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**제4조(재계약)** ① 계약기간 만료자의 재계약체결이 부득이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재계약사유를 (2명 이상일 경우는 연명으로)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재계약대상자 통보는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만료 3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채용계약 해지)** ① 이사장이 계약직의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채용계약 해지 30일전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직이 채용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채용계약 해지 30일 이

전에 사직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휴직)** ① 계약직이 다음 각 호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한다.

1. 질병 및 개인사정으로 15일 이상을 결근하여야 할 때
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

② 전항 각 호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자는 휴직원을 제출한다.

**제7조(휴직기간)** 휴직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채용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.

**제8조(휴직자의 보수)** 휴직기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.

**제9조** 삭제 <2012. 12. 20.>

**제10조(근무실적평가)** ① 규정 제10조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1년마다 정기평가 하되, 보수의 조정, 재계약, 기타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,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.

② 근무실적평가자, 평가내용,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인사규정 및 시행내규의 근무평정방법에 따른다.

③ 근무실적평가결과는 채용계약해지, 보수의 조정,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근무실적평가위원회)** ① 계약직의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관련 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12. 9. 6. 2015. 4. 10>

**제12조(보수결정)** ① 계약직 보수는 규정 제5조에 정한 채용자격구분에 따라 [별표]와 같이하하며,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최초 채용되는 자와 고용승계에 의하여 채용되는 자의 보수는 [별표] 보수지급한계액표에 의한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격과 경력을 감안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.

③ 재계약을 하는 경우 보수금액은 공단 일반직원보수 인상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④ 보수인상기준을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성적

평가 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인상 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동결, 삭감할 수 있다.

⑤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, 퇴직급여금의 지급, 각종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단보수규정을 준용한다.

⑥ 채용계약 변경 등 보수와 관련된 근무여건 변동 또는 계약의 해지, 종료시 지급할 보수금액 산정은 일할로 계산한다.

**제13조(징계의 종류와 효력)** 징계는 견책, 감봉, 해지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견책은 시말서를 징구하고 장래를 훈계한다.
2.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며, 각종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의 1/10을 감액한다.
3. 해지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며 법정퇴직금만 지급한다.

**제14조(징계양정)** 징계양정기준은 인사규정을 적용하되, 정직이상의 비위에 해당할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한다.

**제15조(타 규정 준용 등)**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체규정 및 내규를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사회일반통념 및 관행을 따른다.

부 칙

이 시행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 9. 6.>

이 시행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 12. 20.>

이 시행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 4. 10.>

이 시행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12. 12. 20.>

계약직직원 보수지급한계액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가	-	47,734
나	59,346	39,543
다	48,502	34,447
라	42,552	30,352
마	37,466	-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안성시시설관리공단계약직직원채용계획서

1. 채용예정분야

2. 사업의 필요성

3. 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

○ 직무내용

○ 직무특성

4.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

○ 필요지식

○ 필요학력(관련 전공분야등)

○ 경력요건

○ 요구자격증

○ 기타 요구되는 능력(책임도, 곤란도 등)

5. 채용신분 및 ” 월 봉급액”

【별지 제2호 서식】 <개정 2012. 12. 20.>

**안성시시설관리공단계약직직원채용계약서**

계약직직원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조에 의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“갑” 이라 하고 계약직직원을 “을” 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**제1조(계약당사자)**

- (갑)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
- (을) ① 주 소 :  
 ② 성 명 : (성별 : ) (연령 : 세)  
 ③ 주민등록번호 :

**제2조(업무내용)** 근무부서의 업무분장표에 따른다.

**제3조(계약기간)**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**제4조(복무)**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직원인사규정(내규포함) 및 취업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)**

- ① 기본연봉 ₩ 원(월 원) 과 부가급여는 계약기간동안 공단보수규정의 지급 일에 지급한다.
- ② 국민연금, 의료보험, 산재보험 등의 부담은 공단전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며, 퇴직급여금은 공단 보수규정을 준용한다.
- ③ 신분변동에 따른 보수금액산정은 계약직직원인사규정시행내규 제12조에 따른다.

**제6조(근로조건)**

- 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,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,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.
- ② ” 갑” 은 ” 을” 에게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.
- ③결근, 지각, 조퇴, 외출, 휴가 등은 공단취업규정에 따른다.
- ④결근일수가 연월차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1일에 대하여 기본연봉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

**제7조(근무실적평가)**

” 갑” 은 계약직직원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에 의하여 ” 을” 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.

**제8조(계약의 해지)**

- ① ” 갑” 은 ” 을” 이 계약직직원인사규정 제9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동 규정 제10조에 의한 근무 실적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” 을” 이 월 통상 4일 이상, 6개월간 15일 이상 결근한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9조(계약상의 분쟁)**

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쌍방간의 모든 분쟁이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” 갑” 의 해석에 따른다.

**제10조(기타 채용조건)**

- 1. ” 을” 은 계약직직원인사규정등 공단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2. ” 을” 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” 갑”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3. ” 을” 은 공단제반규정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” 갑”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년 월 일

” 갑”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
 ” 을” 주 소  
 주민등록번호  
 성 명

【별지 제2호 서식】 <개정 2012. 12. 20.>

계약직직원 연봉산출내역

(일반, 기능,기타) 급 호봉기준	연 봉 제 구 성 체 계			
	구 분		지급시기	지급기준
기 본 급	기본연봉	기 준 기 본 급	매월	
운 영 수 당				
장기근속수당		기 본 가산금		
정액급식비				
직급보조비				
명절휴가비				
기술수당				
위험근무수당				
가족수당	부가급여	가족수당	매월	
연월차수당		연월차수당	12월	
휴일근무수당		휴일근무수당	매월	
시간외 근무수당		시간외 근무수당		
자녀학비 보조수당		자녀학비 보조수당	2월,5월 8월,11월	

